

젖 소 검 정 요 령

농수산부 고시 제85-59호 (85. 11. 18)

제 1 조(목적) 이 요령은 축산법시행규칙 제 6 조 3 의 규정에 의하여 젖소(홀스타인종)의 능력검정 방법을 정하므로써 젖소의 능력을 개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능력검정의 구분) 능력검정은 산유능력, 번식능력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
제 3 조(조사항목 및 기준등) ① 산유능력은 산유량, 유지량, 유지율, 착유일수 305일 보정유량 및 유지량에 대하여 조사하되 그 방법은 별표 1 에 의한다.

② 번식능력은 수정년월일, 초임월령, 초산월령, 임신기간, 분만년월일, 번식간격일수, 산차, 분만송아지의 성별과 생시체중, 번식율, 쌍태율을 조사하되 그 방법은 별표 2 에 의한다.

제 4 조(세부절차)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요령 및 절차는 검정기관이 정한다.

(별표 1)

산유능력 검정항목 조사방법

항 목	조 사 방 법
산 유 량	개체별로 월 1 회 조사하되 0.1단위까지 계량
유 지 율	개체별로 월 1 회 1 일간에 매회 착유한 우유를 채취하여 유지방 분석기로 측정 평균하여 소수점이하 세자리를 사사오입
유 지 량	유량에 유지율을 곱하여 산정
착 유 일 수	분만후 제 6 일째부터 건유전일까지의 기간
305일 보정유량 및 유 지 량	착유일수가 305일을 초과할 때에는 305일까지의 실제유량과 유지량으로 하고 305일에 미달될 때에는 DHIA (미) 의 300 일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보정

(별표 2)

번식능력 검정항목 조사방법

항 목	조 사 방 법
초 임 월 령	출생일부터 임신이 확정된 수정일까지의 월수를 계산하고 잔여일이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1 월을 가산하고, 15일에 미달할 때에는 가산 없음.
초 산 월 령	출생일로부터 초산일까지의 월수를 계산하고 잔여일이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1 월을 가산하고 15일에 미달할 때에는 가산 없음.
임 신 기 간	수정일부터 분만당일까지의 일수
번 식 간 격 일 수	최종분만일부터 다음 분만일까지의 일수
생 시 체 중	출생후 초유급여전의 체중